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2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이재강 · 조계원 · 황정아  
오세희 · 김기표 · 이병진  
조정식 · 윤후덕 · 임미애  
김영배 · 김우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비무장지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현행 표현은 그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 · 행정적 적용 시점에 대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를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부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u>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u>	13. ----- ----- ----- ----- ----- ----- ----- ----- ----- ----- ----- ----- ----- ----- ----- ----- <u>1953년 7월 27일</u> <u>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부터--</u> -----.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